#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96 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..

발 의 자: 안호영・이학영・이원택

어기구・윤준병・주철현

정을호 · 박희승 ·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·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고,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·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음.

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·휴양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6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·휴양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	제4조(산림문화・휴양기본계획의
수립·시행 등) ① ~ ⑤ (생	수립·시행 등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
	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
	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
	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
	들어야 한다.
<u>⑥</u> ~ <u>⑫</u> (생 략)	<u>⑦</u> ~ <u>③</u> (현행 제6항부터 제12
	항까지와 같음)